

動力資源部告示(第83-18号)

石油事業法시행령 第15條 第3項 및 第4項 의 규정에 의한 収入金의 납부 및 환급에 관 한 요령

石油事業法시행령(이하 「법」이라 한다) 第15條 第3項 및 第4項의 규정에 의한 収入金의 납부 및 환급요령을 同條 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.

1983. 6. 30

動力資源部長官

第1條 (収入金의 납부)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되는 石油중 선적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수출이 이행되지 아니한 石油에 대한 収入金은 이를 그 다음날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되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한다.

(石油도입량 - 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石油量) × 당해석유통관시점에서 적용되는 収入金 × 선적후 30일 째 되는 날의 换率

第2條 (수출의 범위)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대상이 되는 輸出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① 무역거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된 수출. 다만, 해외일시 보관에 따른 특수 수출입(Time Exchange)은 제외한다.

②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직접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石油製品으로서 외화로 대금결제가 되는 분

③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美합중국 군대에 외화로 납품하는 석유제품

第3條 (収入金 환급) ①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입금은 매월별로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하며 수출월 직전월에 통관된 原油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한다. (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량) × (수출한 제품을 생산한 석유정제업자의 직전월 통관분 原油에 대한 원유도입선단변화 촉진장려금 감액징수전 수입금의 원화납부액 ÷ 수출한 제품을 생산한 석유정제업자의 직전월통관 원유량)

②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되는 石油 중 선적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후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환급할 収入金은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한다.

(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石油量) × (당해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에 대하여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1 배럴당 수입금)

③ 収入金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2조 각호의 수출을 이행한 자로 한다. 다만, 내국신용장에 의한 석유제품공급의 경우에는 수출한 자 또는 석유제품공급자로 하되 석유제품공급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출자가 합의한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第4條 (수출 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石油量의 산출) 수출석유제품 생산에 소요된 石油量은 수출석유제품량(단위 : 배럴)에 기준소요량 1.04를 승한 것으로 하되, 윤활유 기유, 조유 및 윤활유 수출의 경우에는 무역관리규정 제26-3조에 의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소요량 증명상의 소요량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되는 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石油量은 $1 \div (\text{당해 석유도입 계약서에 명시된 석유제품의 총수율})$ 을 기준소요량으로 하되 동 총수율이 96.15% 이하인 경우의 기준 소요량은 1.04로 한다.

부 칙

① 이 告示은 1983년 6 월 15 일 이후 수출되는 石油부터 적용한다.

②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되는 석유제품 이외의 수출에 대한 수입금의 환급시기는 동력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동력자원부고시 제82-34호(82. 8. 7)는 이 告示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. *

■ 動力資源部公告 (第83-18号) ■

石油類輸出추천요령

83년도 하반기 및 84년도 상반기 輸出入 期別公告 총
칙 第6條 第1項의 규정에 따라 動力資源部長官의 수
출추천품목에 대한 輸出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公告한
다.

1983. 6. 30

動力資源部長官

CCCN	추 천 대 상 품 목
2709	石油 및 역청유(原油에 한한다)
2710	1. 부분정제한 石油 2. 挥發油(Gasoline, Naphtha) 3. 灯油(Kerosene) 4. 軽油(Diesel) 5. 重油(輕質, 中質, 重質) 粗油(Residual Fuel Oil) 6. 제트油
2711	프로판, 부탄

2. 추천대상자 : 石油精製業者, 단, 프로판·부탄
은 가스사업자도 수출할 수 있음.

3. 추천범위 및 기준

가. 국내수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
나. 輸出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처리기간 : 2일

5. 구비서류

가. 수출허가(승인)신청서 5부
나.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
다. 사유서 1부

6. 추천장소 :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

부 칙

본 요령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□ 產油國短信 □

사우디, 石油收入減少豆 外交的 影響力 減退

사우디는 世界的 原油供給過剩現象으로 인
해 中東에서의 外交的 影響力を 상당히喪失
했다고 Wall Street Journal紙가 28日 報
道했다.

同紙에 따르면 사우디의 現在 外換保有高
는 약 1,900億弗로서 여전히 막강한 財力을
保有하고 있지만 이것은 10年前에 예상한
5,000億Fr보다 훨씬 못미치는 水準이다. 또
한 石油歲入의 減少로 82~83會計年度의 歲

出이 計劃上의 900億Fr에서 700億Fr로 減縮
되었으며 83~84會計年度의 歲出도 불과 750
億Fr이나 그나마 약 100億Fr의 赤字를 記錄
할 것으로 展望되었다.

사우디는 이같이 財政이 위축됨에 따라 아
랍內의 影響力도 줄어들었으나 그러나 美國
은 사우디를 여전히 中東最大國으로 評価하
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